

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[별표 2]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라.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,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.
- 마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)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라)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

				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	법 제24조제3항 제1호	지정취소		
나.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24조제3항 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	법 제24조제3항 제3호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4조제3항 제4호	경고	지정취소	